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법」 등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2호 내지 10호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을 총칭한다.
2. “청소용역”이란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경상보수용역”이란 시설물 혹은 사택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경비용역”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내의 시설 및 물자 등 재산, 장소에서의 도난, 파괴, 재해, 무단침입, 기타 혼잡 등 위해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방지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하수처리용역”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6.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회사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용역"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9.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0. “운송주선용역”이라 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1항의 국제물류주선업 정의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의해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역에 관련된 적격심사기준의 세부 심사기준 등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기준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및 한수원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

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적격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청소,시설관리,경비,하수처리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육상운송용역의 입찰자가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운송주선용역의 입찰자가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서식 2)
3.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서식 3)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청소, 시설관리, 경비, 하수처리용역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청소, 시설관리에 한함, 필요시 제출)
6.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에 한함)
7. 선사합의서 및 해외파트너사와의 업무확약서 혹은 합의서(원전연료 운송주선용역에 한함)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별도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 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심사한다.

⑥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르되,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적격심사는 별표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④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준비상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 제4항을 제외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심사항목별로 평가한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 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10]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 노무제공 용역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한다.

④ 준비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5]부터 [별표 10]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준비상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4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를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② (삭제)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 한다.

- ④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육상운송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공동수급체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운송주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1항의 낙찰기준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차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할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다만, 적격심사기간의 장기 소요로 계약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순위이후 입찰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심사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절사한 경우로서 절사한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절사한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③ 적격심사항목중 이행실적, 준비상태, 기술능력, 결격사유(기술분야) 심사분야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재무분야) 심사분야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한다.

부칙

1.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업) 및 대표자의 소재 및 거주기간 심사시 배점한도 적용기간을 2012. 1. 1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2018. 3. 5.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2018. 6.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2019. 4. 22.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19년 9월 1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다.

부칙 <2020. 4.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8-㉮]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 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7.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8-㉮]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 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청소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청소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용역 I	용역 II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6	6
	3. 준비상태	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채용	10	10
		나. 주된 영업소의 지역소재기간	3	3
		다.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4	4
		라.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민 사업자	2	2
	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확인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	5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낙찰하한율 : 87.995%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점) = 배점한도 - 5 × ($\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1-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1] 및 [별지 ㉞]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준비상태 “나~라”의 지역소재 관련 평가는 [별지 ㉡]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 신인도평가는 [별표 11]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⑥ 용역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I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 ○ 용역 II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 <p>또는 원자력본부 단위별로 가장 작은 청소용역(2건 이상의 용역으로 발주되는 경우로서 본부 전체가 5억원 이상인 경우)</p>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심사 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용역 I	용역 II	
1. 이행 실적 (10/0)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10	-	
			B. 70%이상 ~ 100%미만	9		
C. 40%이상 ~ 70%미만	8					
D. 10%이상 ~ 40%미만	7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3	-	당해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B. 70%이상 ~ 100%미만	2		
			C. 40%이상 ~ 70%미만	1		
			D. 10%이상 ~ 40%미만	0.5		
2. 경영 상태 (06)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3	3	- 업종평균율 %
			B. 80%이상 ~ 120%미만	2.5	2.5	
		C. 40%이상 ~ 80%미만	2	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3	3	- 업종평균율 %
			B. 80%이상 ~ 120%미만	2.5	2.5	
			C. 40%이상 ~ 80%미만	2	2	
3. 준비 상태 (24)	가.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 - 입찰공고일 현재 거주자		A. 90%이상 채용시	10	10	채용예정자명부 또는 채용각서 제출 소숫점이하 절상
			B. 80%이상 90%미만	9	9	
			C. 70%이상 80%미만	8	8	
	나. 주된 영업소의 지역소재기간 (위생관리업 영업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5년이상	3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확인원 위생관리신고필증
			B. 3년이상 5년미만	2	2	
			C. 2년이상 3년미만	1.5	1.5	
		D. 1년이상 2년미만	1	1		
다.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5년이상	4	4	주민등록등(초)본	
		B. 3년이상 5년미만	3	3		
		C. 2년이상 3년미만	2	2		
		D. 1년이상 2년미만	1	1		
라.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민 사업자		A. 기존발전소	2	2	별지 ㉔에 의함	
		B. 신규건설 발전소	1	1		
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		A. 이행확약서 제출시	5	5	별지서식 제5호	
		B. " " 미제출시	심사제외	심사제외		

주)

- ① 이행실적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법인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원본제시후 사본제출, 실적증명서는 원본제출), 기성실적을 포함함, 혼합된 실적은 발주기관확인
 - 원자력발전소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에 한함.
 -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② 경영상태 준비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기업규모구분)의 준비비율과 동일년도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 ③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 평가자료로 채용예정자명부 또는 채용각서 제출
 - 적격심사 시 채용예정자명부 또는 본인의 채용동의서가 첨부된 채용각서 제출
 - 착수계 제출 시 적격심사에 제출한 채용예정자명부 또는 채용각서의 채용율을 만족하는 인원으로 채용인력명부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해제)
- ④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민 사업자 평가는 [별지 ㉔]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서 대로 노무비를 계상하며, 계약내역서는 확약서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옥사택 경상보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사옥사택 경상보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실적비율	1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6	6
	3. 준비상태	가. 작업용 차량보유	적격여부	적격여부
		나. 작업용구 및 안전장구 보유	적격여부	적격여부
		다. 기술인력 상태	4	4
		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채용	6	6
		마. 주된 영업소의 지역 소재기간	3	3
		바. 대표자의 지역 거주기간	4	4
		사.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민 사업자	2	2
	아.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확약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	5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낙찰하한율 : 87.995%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배점한도 - 5 × ($\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p>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한다</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1] 및 [별지 ㉓]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준비상태 평가의 지역소재 관련 "라~바"는 [별지 ㉔]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 신인도평가는 [별표 11]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액 5억원 이상	추정가액 5억원 미만	
1. 이행 실적 (10/0)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0 9 8 7	-	- 동등이상용역: 당해용역, 공동주택위탁관리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3 2 1 0.5	-	- 유사용역: 시설물유지관리업
2. 경영 상태 (06)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3 2.5 2	3 2.5 2	- 업종평균율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3 2.5 2	3 2.5 2	- 업종평균율 %	
3. 준비 상태 (24)	가. 작업용차량 보유 - 1톤이상 트럭	2대이상 보유시	적격 여부	적격 여부	자동차등록증명원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영업용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나. 작업용구 및 안전장구 - 설계서 명시된 수량기준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 수량 대비 80%이상 확보시	적격 여부	적격 여부	임차분 포함 (임대차계약서제시)	
	다. 기술인력 상태 - 3년이상 기술경력소유자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각 1인 필수	A. 10명이상 보유 또는 채용시 B. 8명이상 10명미만 C. 6명이상 8명미만 D. 6명미만	4 3 2 1	4 3 2 1	- 보유명단 또는 채용예정자명부 - 용역대상에 따라 분야 및 인원을 가감할 수 있음	
	라.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 - 입찰공고일 현재 거주자 - 기술인력 포함	A. 90%이상 채용시 B. 80%이상 90%미만 C. 70%이상 80%미만 D. 60%이상 70%미만	6 5 4 3	6 5 4 3	채용예정자명부 또는 채용각서 제출 소숫점이하 절상	
	마. 주된 영업소 지역소재기간 (당해업 영업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5년이상 B. 3년이상 5년미만 C. 2년이상 3년미만 D. 1년이상 2년미만	3 2 1.5 1	3 2 1.5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확인원 영업허가(등록)증	
	바.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5년이상 B. 3년이상 5년미만 C. 2년이상 3년미만 D. 1년이상 2년미만	4 3 2 1	4 3 2 1	주민등록등(초)본	
	사.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민 사업자	A. 기존발전소 B. 신규건설 발전소	2 1	2 1	별지㉔에 의함	
	아.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	A. 이행확약서 제출시 B. " 미제출시	5 심사제외	5 심사제외	별지서식 제5호	

주)

① 이행실적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관련협회,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체 이하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원본제시후 사본제출, 실적증명서는 원본제출), 기성실적을 포함함, 혼합된 실적은 발주기관 확인
- 원자력발전소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에 한함
- 사옥 및 사택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에 한함 (단, 청소용역은 불인정, 주상복합빌딩, 아파트실적은 인정)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적(전문건설협회 확인)에 한함
-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기업규모구분)의 기준비율과 동일년도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작업용차량 및 보수용공구는 적격여부로 평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시에 현장반입 완료(불충족 시 부적격 처리 함)하여야 한다.

- 보수용공구의 보유율 산정산식 = 설계서상의 각 품목별단가 * 보유수량 / 설계서상 공구총액

④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서 대로 노무비를 계상하며, 계약내역서는 확약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 관련 평가자료는 아래와 같다.

- 적격심사 시 채용예정자명부 또는 본인의 채용동의서가 첨부된 채용각서 제출
- 착수계 제출 시 적격심사에 제출한 채용예정자명부 또는 채용각서의 채용율을 만족하는 인원으로 채용인력명부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해제)

⑤ 기술인력 상태

- 기술인력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지역의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에 3년 이상의 기술경력 소유자를 말한다.
- 최소필수인력 4명(영선2, 기계1, 전기1분야 각 1명)은 각 분야에 5년 이상의 기술경력소유자이어야 하며, 1인이라도 미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
- 인력 미보유시 채용각서를 제출할 수 있되, 이 경우 최소필수인력 4명에 대해서는 명단과 본인의 채용동의서가 첨부된 채용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경력증명서 인정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건물시설관리서비스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발행한 증명서 (공공기관이외 경력자는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납입증명서 중 1개 추가제출)

[별표 3] 경비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경비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4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6	12
	3. 준비상태	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확약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나. 경비지도사 보유	10 적격여부	8 적격여부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낙찰하한율 : 87.995%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회생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5 × |($\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3-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3-1] 및 [별지 2]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3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3 관련)

심사 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 이행 실적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4 13 12 11	10 9 8 7	- 동등이상용역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 - 유사용역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불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4 3.5 3 2.5	3 2.5 2 1.5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지 ㉔ 참조	16	12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보고서
3. 준비 상태	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	A. 이행확약서 제출시 B. " " 미제출시		10 0	8 0	별지서식 제5호 지방경찰청의 적법배치 여부에 대한 확인증
	나. 경비지도사 보유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1항 "별표3" 기준이상 확보시 적격 * 미확보시 부적격		적격 여부	적격 여부	

주)

① 이행실적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법인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원본제시후 사본제출, 실적증명서는 원본제출), 기성실적을 포함함, 혼합된 실적은 발주기관 확인
-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지 ㉔]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서 대로 노무비를 계상하며, 계약내역서는 각서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별표 4] 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실적비율	20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 준비상태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5	5
		나. 장비 보유상황	적격여부	적격여부
	다. 근로기준법 등 관리법규 준수확약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	5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낙찰하한율 : 87.995%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배점한도 - 5 × ($\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p>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4-1] 및 [별지 ㉔]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4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4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 점	
		처리용량	운영기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이행 실적	가. 동등이상 용역	500톤/일 이상	A. 1년 이상 B. 6개월 ~ 1년 미만	20 18	10 9
		50 ~ 500톤/일	C. 1년 이상 D. 6개월 ~ 1년 미만	16 14	8 7
	나. 유사용역	500톤/일 이상	A. 1년 이상 B. 6개월 ~ 1년 미만	10 8	5 3
		50 ~ 500톤/일	C. 1년 이상 D. 6개월 ~ 1년 미만	6 4	2 1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 참조		10	10
3. 준비 상태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등록업체 B.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		5 3	5 3
	나. 장비보유 상황	A. 보유시(임차가능) B. 미보유시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	A. 이행 확약서 제출 B. 이행 확약서 미제출		5 심사제외	5 심사제외

주)

- ①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의 용역이행실적(설비용량 및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역실적증명서 인정범위는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체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수리 완료된 시설에 한함)의 운영(시운전 포함)에 대한 실적만 인정한다.
 - 동등이상의 용역 : 질소, 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 공법 운영실적
 - 유사용역 : 상기 고도처리공법 이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제거만을 위한 활성 슬러지 공법 운영실적
 ※ 평점은 개별시설로서 동등이상 및 유사용역 실적 중 가장 높은 점수 1개씩만 인정하여 합산한 값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기술인력 보유상황에 대한 평가는 하수도법(제51조, 제53조 등)에서 정한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로 하며,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평가는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1톤이상 작업용 트럭 1대 및 수질분석 휴대용계측기(pH, DO, MLSS) 각각 1대}이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종합보험가입증명서,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원본)로 평가한다.
- ③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확약서 대로 노무비를 계상하며, 계약내역서는 각서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세부평가기준(별표 1 내지 별표 4 관련)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배점한도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 다. 예정가격이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말한다.
 -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실적비율	3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6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style="text-align: center;">※ 낙찰하한율 : 80.49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style="text-align: center;">※ 낙찰하한율 : 84.24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5-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5-1] 및 [별지 ㉔]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5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5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 점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1. 이행 실적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 ~100%미만 C. 40%이상 ~70%미만 D. 10%이상 ~40%미만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100%미만 C. 40%이상 ~70%미만 D. 10%이상 ~40%미만	9 6 3 2	-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㉓ 참조	30	30

주)

-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6-㉔]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5	-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 상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낙찰하한율 : 80.49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 만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낙찰하한율 : 84.24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6-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1] 및 [별지 ㉔]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6-1]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6-㉔]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5	-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낙찰하한율 : 87.995%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6-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1] 및 [별지 ㉔]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6-1]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6-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6-㉓ 및 별표 6-㉔ 공통)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6-㉓ 및 별표 6-㉔ 공통)

(단위 : 점)

심사 항목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1. 이행 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0 9 8 7	-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㉓ 참조	25	30
3. 기술 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기능사 D. 미보유	2인 이상 5 1인 3 3인 이상 5 2인 4 1인 2 3인 이상 3 2인 2 1인 1 0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7]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아래의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 적용하며,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 낙찰하한율 : 80.49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 낙찰하한율 : 84.24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7-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1] 및 [별지 ㉔]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7-1]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7-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7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7 관련)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1. 이행 실적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㉗ 참조	10	10	
3. 기술 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주]

-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③ 기술능력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

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2.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 이행 실적비율	20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 기술능력	안전성 정도	10	10
	4.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circ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style="text-align: center;">※ 낙찰하한율 : 80.49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circ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style="text-align: center;">※ 낙찰하한율 : 84.24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8-㉓-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8-㉓-1] 및 [별지 ㉓]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8-㉓-1]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⑥ 결격사유 평가는 [별표 8-㉓-1] ④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8-㉓-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8-㉓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8-㉓ 관련)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 점		비 고
				추장가액 5억원이상	추장가액 5억원미만	
1. 이행 실적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㉓ 참조	10	10	
3. 기술 능력	안전성 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사불응	10 8 6 4 2	10 8 6 4 2	

[주]

-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③ 기술능력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④ 결격사유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영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

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는 1호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을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 이행 실적비율	20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0
	3. 신 인 도		+ 6.75 ~ △5.0	+ 6.75 ~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회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circ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style="text-align: center;">※ 낙찰하한율 : 80.49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circ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style="text-align: center;">※ 낙찰하한율 : 84.245%</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8-㉔-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8-㉔-1] 및 [별지 ㉔]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별표 8-㉔-1] ③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8-㉔-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8-㉔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8-㉔ 관련)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 등급	평 점		비 고
				추장가액 5억원이상	추장가액 5억원미만	
1. 이행 실적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6 4 2 1	3 2 1 0.5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㉔ 참조	20	20	

[주]

-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③ 결격사유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는 1호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을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정비자재(건설기자재) 국외운송주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30억 원 이상 (①)	30억 원 미만~10억 이상 (②)	10억 원 미만 (③)
I. 당해 용역이행 능력	1. 수행실적	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동등이상물자 또는 유사물자 국외운송주선 수행실적	25	25	20
	2. 기술능력	가.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나. 수행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다. 품질 보증	35	25	2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10
	4. 신인도		+ 6.75 ~ △5.0	+ 6.75 ~ △5.0	+ 6.75 ~ △5.0
	소 계		70	60	5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낙찰하한율 : ① 80.495%, ② 82.995%, ③ 85.495%	30	40	50
합 계			100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 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p>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9-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9-1] 및 [별지 ㉓]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9-1]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9-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9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9 관련)

(1 : 30억원 이상, 2 : 3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3 : 10억원 미만, 단위 : 점)

심사 항목	심사 항목	평가등급	평점			
			1	2	3	
1. 이행능력	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동등이상물자 또는 유사물자 국외 운송주선 수행실적	동등이상물자 또는 유사물자 운송물량 (R/T) (수행물량/입찰대상물량)	A. 100% 이상 B. 80%이상 ~ 100% 미만 C. 60%이상 ~ 80% 미만 D. 40%이상 ~ 60% 미만 E. 20%이상 ~ 40% 미만	25 23 21 19 17	25 23 21 19 17	20 18 16 14 12
2. 기술능력	가.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운송주선 영업년수	A. 10년 이상 B. 5년 이상 ~ 10년 미만 C. 5년 미만	15 13 11	10 8 6	10 8 6
	나. 수행 전문 인력 보유 현황(5년 이상의 운송주선 업무 유경험자)	운송주선 관련 전문인력 보유정도	A. 3명 이상 B. 2명 C. 1명 이하	18 15 12	13 9 6	8 5 2
	다. 품질 보증	국외운송주선분야	ISO 품질인증서를 득한 업체	2	2	2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㉗ 참조		10	10	10

※ [주]

- ① 이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이행실적의 물량 산출시 항공의 경우 운임적용톤수를 기준으로 하되 1,000kg을 1 R/T로 적용한다.
 2. 장기운송계약이라고 함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운송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을 의미한다.
 3. 동등이상 물자라고 함은,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소용 발전설비 또는 정비용 기자재를 의미한다.
 4. 유사물자라고 함은, ③항의 운송을 제외한 '플랜트 설비',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전자 설비'의 운송실적을 말한다.
 5. 이행실적은, 적격심사대상자와 화주간 직접 계약된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실제로 이행된 실적만 인정가능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송실적을 제외한 모든 실적은 실적증명서 제출 시, 실제 운송물량을 확인 할 수 있는 B/L, 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실적인정 불가)
- ② 기술능력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 영업년수는 법인등기부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2. 수행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가. 해당구역에 참여한 업체 보유 인력 수(명)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최근 5년간 운송주선 실적 및 경력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 다. 주선전문인력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에 5년 이상 소속된 경력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 라. 주선전문인력은 현 재직중인 소속업체에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되,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소속업체에서 경력증명서를, 현 소속업체에서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실적인정 불가)
- ③ ①항목 및 ②항목 평가시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전연료 국외운송주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30억 원 이상 (①)	30억 원 미만~10억 이상 (②)	10억 원 미만 (③)
I. 당해용역 이행능력	1.수행실적	동등 실적	가. 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실적(입찰참가자) 나. 원전연료 복합운송주선실적(해외 Partner)	25	25	20
		유사 실적	다.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라. 위험물 Class 7 유형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마. 한수원기자재 운송실적			
	2.기술능력	가. 장비 보유 현황 나.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다. 수행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라. 교육훈련 이수 수준	35	25	20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10	
	4. 신인도		+ 6.75 ~ △5.0	+ 6.75 ~ △5.0	+ 6.75 ~ △5.0	
	소 계		70	60	5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낙찰하한율 : ① 80.495%, ② 82.995%, ③ 85.495%	30	40	50	
합 계				100	100	100
III. 결격사유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 2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p> <p style="text-align: center;">(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p>- 는 절대값 표시임.</p> <p>-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p> <p>-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p>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0-1]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1] 및 [별지 ②]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1]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10-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0 관련)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0 관련)

(1 : 30억원 이상, 2 : 3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3 : 10억원 미만, 단위 : 점)

심사 분야	심사항목		평가기준		평점			
					1	2	3	
1. 이행 능력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원전연료와 동등 운송 실적 [물량기준]	가. 입찰참가자 실적(물량) (실적/당해 용역 예상물량)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5.0	25.0	20.0	
		나. 해외파트너 실적(물량) (실적/당해 용역 예상물량)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5.0	25.0	20.0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유사 운송 실적 [금액기준]	다. 위험물 등급별 운송 실적(금액) (실적/당해 용역 발주금액)	Class 7의 원전 연료를 제외한 1 부터 9까지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행한 총 사업비 실적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4.0	4.0	4.0	
		라. 위험물 Class 7 유형별 운송 실적(금액) (실적/당해 용역 발주금액)	Class 7 유형별 최근 5년간 수행한 총 사업비 실적(가 항목의 인 정 실적 제외)	Class 7 [Yellow III] Class 7 [Yellow II] Class 7 [White I]	7.0	7.0	7.0	
		마. 한수원기자재 운송실적 (실적/당해 용역 발주금액)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4.0	4.0	4.0	
					3.0	3.0	3.0	
	2. 기술 능력	가. 장비보유 현황 - 입찰참가자/해외파트너 소유의 원전연료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소유, 임대, 제작 수량		A. 30대 이상 B. 15대 이상 ~ 30대 미만 C. 1대 이상 ~ 15대 미만		10.0	6.0	5.5
		나.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A. 운송주선 영업년수 10년 이상인 업체 B. 운송주선 영업년수 10년 미만 5년 이상 업체 C. 운송주선 영업년수 5년 미만 업체		10.0	6.0	5.5
다. 수행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원전연료 관련 기술인력보유	A. 3명 이상 B. 2명 이상 C. 1명 이상 D. 1명 미만		4.0	3.5	3.0	
		운송주선 관련 전문인력보유	A. 3명 이상 B. 2명 이상 C. 1명 이상 D. 1명 미만		4.0	3.5	3.0	
라. 교육훈련 이수 수준		A. 교육훈련 이수율 100% 이상 B. 교육훈련 이수율 100% 미만 50% 이상 C. 교육훈련 이수율 50% 미만		7.0	6.0	5.0		
3.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별지 ㉓ 참조		10	10	10	

※ [주]

- ① 수행실적의 인정은 동등 운송 실적과 유사 운송 실적으로 구분하고, 동등 운송 실적은 한수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하는 위험물이 포함된 용역 이행 실적을 의미한다. 유사 운송 실적은 계약목적 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Class 7의 한수원에서 발주한 원전연료 물질을 제외한 Class 1부터 9까지의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수행한 실적, Class 7의 유형에 해당하는 실적, 원전 정비자재를 포함한 실적을 의미한다.
- ② 수행실적의 동등 실적은 가, 나 목으로 평가하며, 두 항목 중 평가를 높게 받은 배점을 단일로 인정하여 동등 실적의 최대 배점한도는 25점으로 하고, 유사 실적의 최대 배점한도는 7점 또는 4점으로 다, 라, 마 항목중 하나만 인정한다. 즉, 동등 실적이 모두 인정될 경우, 25점 만점을 받고 반면, 25점 미만일 경우에는 유사 실적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단일 항목과 합산하여 최대 25점을 획득할 수 있다.
- ③ 동등 운송 실적의 원전연료는 UF6(6불화우라늄), UO2(산화우라늄)을 의미하고, 동등 운송 실적은 IMDG Code의 규정에 따라 Class7 중 원전연료의 운송실적을 의미한다.
- ④ 유사 운송 실적은 IMDG Code의 규정에 따라 Class1에서부터 Class9까지의 위험물을 운송한 실적 및 정비자재 운송 실적을 의미한다.
- ⑤ 실적 인정과 관련된 서류는 가, 나, 다, 라, 마 항목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중복일 경우에는 단일의 서류만 인정한다.
- ⑥ 평가 세부기준은 아래 '원전연료 국외운송주선용역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원전연료 국외운송주선용역 세부평가 기준

1. 이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

가. 입찰참가자 실적

- ①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¹⁾)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원전연료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은 20ft컨테이너 수량 혹은 운임적용톤수(R/T : 중량(W/T)과 부피(CBM)중 큰 것)에 의하고, 필요시 20ft컨테이너 당 25R/T로 환산 적용한다.
- ③ 입찰참가자의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국외운송실적 증명서(붙임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국외운송주선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별지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④ 심사항목 등급 외는 "0"점으로 한다.
- ⑤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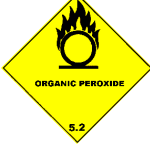
나. 해외파트너 실적

- ①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원전연료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국외운송주선실적(UF6/UO2)은 20ft컨테이너 수량 혹은 운임적용톤수(R/T : 중량(W/T)과 부피(CBM)중 큰 것)에 의하고, 필요시 20ft컨테이너 당 25R/T로 환산 적용한다.
- ③ 해외 Partner의 운송주선 실적증명서(UF6/UO2)는 원전연료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증명을 요한다.(Partner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및 운송주선 계약서 첨부)
- ④ 심사항목 등급 외는 "0"점으로 한다.
- ⑤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위험물 등급별 운송 실적




- ① 입찰참가 업체의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 유사실적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위험물 등급별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증명서는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입찰참가 업체의 국외운송실적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국외운송주선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③ 심사항목 등급 외는 "0"점으로 한다.
- ④ 평가방법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7년)간 실적금액의 총합을 당해 입찰공고문의 추정운송비로 나눈 값(%)
- ⑤ 유사실적은 Class 7을 제외한 Class 1~6, 8~9까지의 등급을 인정하며, 각 등급 및 Label에 따른 비중은 모두 동일하다.
- ⑥ 입찰참가 업체의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UF6 : 6불화우라늄 / UO2 : 산화우라늄

Class	Label		
1			
	Division 1.1D	Division 1.3C	Division 1.4S
2			
	Division 2.1	Division 2.2	Division 2.3
3			
	Class 3		
4			
	Division 4.1	Division 4.2	Division 4.3
5			
	Division 5.1	Division 5.2	
6			
	Division 6.1	Division 6.2	
8			
	Class 8		
9			
	Class 9		

라. 위험물 Class 7(방사능 물질) 유형별 운송 실적

- ① 입찰참가 업체의 위험물 Class7 등급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및 입찰물량은 빈용기 운송실적을 제외한 실적 및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별표 9의 가 항목에서 인정받은 원전연료 실적은 인정받지 못한다.
- ③ 위험물 Class 7 등급 복합운송주선유사실적 증명서는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입찰참가 업체의 국외운송실적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국외운송주선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의 상호가 기재된 선사발행 B/L 등 증빙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④ 심사항목 등급 외는 "0"점으로 한다.
- ⑤ 유사실적은 Class 7의 Label에 따라 정의하며, Class 7 White I은 40%, Class 7 Yellow II은 70%, Class 7 Yellow III는 100%로 인정한다.

Class	Label		
7			
등급구분	Class 7 White I	Class 7 Yellow II	Class 7 Yellow III
인정기준	40%	70%	100%

- ⑥ 평가방법 :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총합을 당해 입찰공고문의 추정운송비로 나눈 값(%)

평가기준			세부평점
Class 7 유형별 최근 5년간 수행한 총 사업비 실적	Class 7 White I	A. 100%이상	5
		B. 70%이상 ~ 100%미만	4
		C. 40%이상 ~ 70%미만	3
	Class 7 Yellow II	A. 100%이상	6
		B. 70%이상 ~ 100%미만	5
		C. 40%이상 ~ 70%미만	4
	Class 7 Yellow III	A. 100%이상	7
		B. 70%이상 ~ 100%미만	6
		C. 40%이상 ~ 70%미만	5

- ⑦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한수원기자재 운송실적

- ① 이행실적 물량 산출시 항공의 경우 운임적용톤수를 기준으로 하되 1,000kg을 1 R/T로 적용한다.
- ② 한수원기자재라 함은 한수원에서 소요로 하는 원전 또는 수력 건설, 정비, 운영에 소요되는 자재를 운송한 실적을 의미한다.(한수원 실적 증명 가능 분에 한해서만 인정)
- ③ 운송실적은 적격심사대상자와 화주간 직접 계약된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실제로 이행된 입찰참가 업체의 실적만 인정가능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송실적을 제외한 모든 실적은 실적증명서 제출 시, 실제 운송물량을 확인 할 수 있는 B/L, 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실적인정 불가)
- ④ 평가방법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7년)간 실적금액의 총합을 당해 입찰공고문의 추정운송비로 나눈 값(%)

2. 기술능력 평가 세부 기준

가. 장비보유 현황

- ① 컨테이너는 UF6용 UX-30 실린더를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20ft flat rack을 의미한다.
- ② 컨테이너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컨테이너를 임대 또는 제작할 수 있다.
- ③ 컨테이너를 소유한 자는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컨테이너 번호가 명시된 컨테이너 사진 및 일상검사서(inspection certificate)를 컨테이너 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보유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실사점검 또는 컨테이너 보유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컨테이너를 임대 또는 제작할 경우, 총 제작비용(일반 컨테이너 구매 및 특수 컨테이너 개조 비용)의 10%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취급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세부내용은 원전연료 납품을 위한 주요 물품인 '컨테이너 제작 및 임대'에 관한 약약조건의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 제작비용 : 만원/대(일반 컨테이너 구매 및 특수 컨테이너 개조 비용 포함)
- ⑤ 장비보유 평가는 컨테이너 소유수량과 임대 또는 제작 대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⑥ 제작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기 제출된 제작비용 증빙서류를 컨테이너 임대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⑧ 항목 관련서류 미제출시 '0'점으로 한다.

나. 영업년수 및 업무경험

- ① 영업년수는 법인등기부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수행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① 해당용역에 참여한 업체 보유 인력 수(명)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수행 전문 인력 보유 현황 평가는 원전연료 관련 기술인력 및 운송주선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분한다.
- ③ 원전기술인력이란 근무년수와 관련 없이 원자력에 관한 한국원자력기술원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술사, 원자력기사 중 하나를 취득 또는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²⁾
- ④ 주선전문인력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에 5년 이상 소속된 경력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 ⑤ 해당 원전기술인력은 상기 언급한 관련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원전기술인력 및 주선전문인력은 현 재직중인 소속업체에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되,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소속업체에서 경력증명서를, 현 소속업체에서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실적인정 불가)
- ⑥ 동일인이 원전기술인력 및 주선전문인력으로 모두 해당될 경우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
- ⑦ 제출된 서류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기술자격시험(http://license.kins.re.kr/lice/jsp/license/index_03_01.jsp) 참조

라. 교육훈련 이수 수준

- ① 교육훈련이란 참여기술자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위험물 안전운송 초기교육' 및 '위험물 안전운송 재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한 자를 말하며,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해당연도의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 이행실태의 평가대상은 다 항목의 평가대상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경영상태 평가 공통사항

주1)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단, 발전소 주변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노무제공 용역(청소용역, 사육·사택경상유지 보수용역)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또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한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경영상태 평가 관련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시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2)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1. 경영상태 평가시의 업종평균율 적용을 위한 평가대상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에서 분류한 업종의「중분류(종합)」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2.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상기 1호 자료상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 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가.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나.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된 업체는 제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적격심사대상자가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감법 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서식4)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해당국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서식4)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의 경우는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5/100를,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10/100을,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20/100을 경영상태 평가 취득점수에서 각각 감점 처리하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주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며,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6점	12점	10점	6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6	12	10	6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15.8	11.8	9.8	5.8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15.6	11.6	9.6	5.6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15.4	11.4	9.4	5.4
BB+, BB0	B+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15.2	11.2	9.2	5.2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15.0	11.0	9.0	5.0
B+, B0, B-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14.8	10.8	8.8	4.8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6.0	12.0	9.0	7.0	4.5

지역 소재 평가방법

- ① 적용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단순노무용역을 제공하는 별표1, 별표2의 용역
-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 기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해당 발전소 발전기로 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지역의 관할구역
- ③ 주된 영업소의 지역소재기간 : 계약규정시행세칙 제35조1항7호에 따른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업장을 법인등기한 업체(법인이 아닌 경우는 사업자등록확인원), 필요시 면허증 또는 신고증 제출
 - 지역소재 기준일은 당해업종의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청소용역의 경우는 2012.01.01이후 입찰공고분 부터는 위생관리업의 사업자등록일을 적용한다.
- ④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 당해지역에 주민등록된 지역주민으로서 대표자로 등기(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연속된 전임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적용한다.

번호	합산이 가능한 경우
①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개인사업체(A)의 대표자가 연속하여 당해지역의 다른 개인사업체(B)의 대표자가 된(등기 또는 등록) 경우 ※ A는 존속 또는 폐업
②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개인사업체(A)의 대표자가 연속하여 당해지역의 법인사업체(C)의 대표자가 된 경우 ※ A는 존속 또는 폐업
③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개인사업체(A)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B)으로 전환하여 연속하여 법인사업체(B)의 대표자가 된 경우 ※ A는 폐업
④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당해지역의 타 법인사업체(C)를 포괄 양수하여 법인(D) 명의로 합병하고, 연속하여 법인(D)의 대표자가 된 경우 ※ C는 폐업
⑤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당해지역의 타 법인사업체(C)와 합병하여 법인(E)을 당해지역에 신설하고, 연속하여 신설 법인(E)의 대표자가 된 경우 ※ D, C는 폐업
⑥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당해지역에 법인(E)을 신설하고, 연속하여 신설 법인(E)의 대표자가 된 경우 ※ D는 존속 또는 폐업
⑦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타 지역의 법인사업체(C)를 포괄 양수하고, 연속하여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된 경우 ※ C는 폐업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계속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지역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 공동대표자에 대한 지역거주기간 산정 시 필요할 경우(예외적인 상황 등) 상법 제389조3항 및 동법 제386조1항 등 관련법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한다.
-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아닌 수인의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이와 동등한 성격의 대표자에 대한 명칭을 포함함)등기된 경우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1인의 대표이사(공동사업자)를 평가한다.

타 평가항목(원주민 가점, 신인도의 여성기업 등)의 평가시에도 동일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 발전소 주변지역 원주민 사업자 기준

- 발전소 주변지역 : 상기 ②항에 따름
- 원주민 사업자(대표자) 판단기준 (거주 당시 사업자 여부 무관)
 - . 기존발전소 : 최초 발전소 착공일(또는 승인고시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 . 신규발전소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사업자(대표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 제출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기간 출신학교의 생활기록부(초.중.고)로 확인한다. 다만, 생활기록부 제출이 불가할 경우 법무사 공증으로 한다.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대상발전소별 해당지역 내역

발전소명	적용기준일	필수 거주기간	해당 주변지역
고리원자력	1971.11.05. (1968.05.01.)	1968.11.06.~1971.11.05. (1965.05.02.~1968.05.01.)	부산광역시 기장군 : 장안읍, 일광면 울산시 울주군 : 서생면
(신고리#1,2)	1997.12.26.	1992.12.27.~1997.12.26.	부산광역시 기장군 : 장안읍, 일광면 울산시 울주군 : 서생면
새울원자력	2008.04.15. (2007.09.13.)	2005.04.16.~2008.04.15. (2004.09.14.~2007.09.13.)	부산광역시 기장군 : 장안읍, 일광면 울산시 울주군 : 서생면, 온양읍
영광원자력	1980.12.09. (1978.07.22.)	1977.12.10.~1980.12.09. (1975.07.23.~1978.07.22.)	전남 영광군 : 홍농읍, 법성면, 백수면 전북 고창군 : 상하면
월성원자력	1977.05.03. (1975.06.17.)	1974.05.04.~1977.05.03. (1972.06.18.~1975.06.17.)	경북 경주시 :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신월성#1,2)	1995.07.20.	1990.07.21.~1995.07.20.	경북 경주시 :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울진원자력	1982.03.05. (1979.05.09.)	1979.03.06.~1982.03.05. (1976.05.10.~1979.05.09.)	경북 울진군 : 북면, 죽변면, 울진읍
(신울진#1,2)	2002.05.04.	1997.05.05.~2002.05.04.	경북 울진군 : 북면, 죽변면, 울진읍

※ 적용기준일란의 ()안 일자는 기존발전소 승인고시일

※ 발전소명란의 ()는 신규건설 발전소

⑥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실확인 제출서류 (각 1부)

- 주소지 이력사항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 시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

위장전입업체 평가 제외 등

- ① 적용대상 : 단순노무용역을 제공하는 별표1, 별표2의 용역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위장전입자로 간주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수원 공급자회원명부(K-pro 공급자세부정보관리)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당해 지역과 다른 자. 단, 전화번호가 당해지역과 다른 경우 현지 조사를 해서 그곳에 실제 존재 하는지 여부 확인 후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함
- ③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최고통지 또는 공고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37조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 2012.01.01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별표 1부터 별표 10]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I.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나.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 기업 지원 ([별표1]~[별표3]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 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인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인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인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 기업 지원 ([별표1]~[별표3]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인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인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인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기업(운송주선용역에 한함)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G.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 2.0 0.5 0.5 1.0 0.5 0.5 1.0 0.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p>J.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p> <p>K.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p> <p>L.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p> <p>M.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p> <p>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p> <p>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p> <p>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p> <p>Q.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p>	<p>1.0</p> <p>2.0</p> <p>2.0</p> <p>2.0</p> <p>2.0</p> <p>1.5</p> <p>1.25</p> <p>1.0</p>
<p>마. 불공정 계약행위</p>	<p>①납품지연</p>	<p>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p> <p>(1) 10%이상</p> <p>(2) 8%이상~10%미만</p> <p>(3) 6%이상~8%미만</p> <p>(4) 4%이상~6%미만</p> <p>(5) 2%이상~4%미만</p> <p>(6) 2%미만</p>	<p>△2.00</p> <p>△1.75</p> <p>△1.50</p> <p>△1.00</p> <p>△0.50</p> <p>△0.25</p>
	<p>②불공정 하도급 거래</p>	<p>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법 상 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p> <p>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p>	<p>△2.0</p> <p>△1.0</p>
	<p>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p>	<p>A. 부적정처리가능성</p> <p>(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p> <p>(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p>	<p>△3.0</p> <p>△2.0</p>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0
바. 부당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A.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 위반 2명 이상 · 위반 1명	△1.0 (△1.0) (△0.5)
아.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 (직전 용역결과 보고서 점수) ([별표9], [별표10] 운송주선용역에 한함)		A.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1) A등급 : 수(매우 우수) (2) B등급 : 우(우수) (3) C등급 : 미(보통) (4) D등급 : 양(미흡) (5) E등급 : 가(매우 미흡)	+1.0 +0.5 0 △0.5 △1.0
자. 국제해상위험물 교육 이수 ([별표10] 원전연료 운송주선용역에 한함)		A.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IMDG Code)에 따라 각 국가별 정부기관에서 인정 및 승인하는 원전연료(UF6/UO2)가 포함된 해상위험물 교육을 이수한 1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2.0
카. 기술인력 보유여부 ([별표9] 정비자재, 건설기자재 운송주선용역에 한함)		A. 원전 관련 기술인력 보유 여부	+1.0

II.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 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카)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III.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 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빙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 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
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 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 10.166\dots = 11$ 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 10.166\dots = 11$ 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 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우수 국제물류추진업체	관세청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수출입인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인증서 또는 우수 국제물류추진업체인증서
F.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G.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H.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K.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L.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M.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N.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O.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P.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Q.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 바. <삭제>
-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다.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평가

- 가.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8. “아.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 평가[운송주선용역만 해당, 발주부서 평가사항]

- 가. 한수원에서 발주한 운송주선용역 중 용역결과 평가를 받은 입찰자에 한하여 해당 평가등급으로 평가를 한다. 다만, 용역결과 평가를 받지 않는 자는 C등급(0점)으로 한다.
- 나.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점수’는 [별지서식 7]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기준’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 다. 평가는 [별지서식 7]의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판정하여 업체에게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로 통보한다. 단,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³⁾

9. “자. 국제해상위험물 교육 이수” 평가[원전연료 운송주선용역만 해당, 발주부서 평가사항]

- 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IMDG Code)에 따라 각 국가별 정부기관에서 인정 및 승인 하는 원전연료(UF6/UO2)가 포함된 해상위험물 교육을 이수한 1인 이상을 보유한 자

10. “차. 기술인력 보유여부” 평가[정비자재, 건설기자재 운송주선용역만 해당, 발주부서 평가사항]

- 가. 원전 관련 기술인력이란 근무 년수와 관련 없이 원자력에 관한 한국원자력기술원 국가 기술자격시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중 하나를 취득 또는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⁴⁾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참조

4) 국가기술자격시험(http://license.kins.re.kr/lice/jsp/license/index_03_01.jsp) 참조

적격심사신청서

- 공고번호 :
- 용역명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계약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근로조건이행확약서(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사육,사택, 하수처리시설), 경비용역인 경우) 1부
 5. 경영상태 증빙서 1부
 6. 관련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기준 및 업종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인 경우) 1부
 7. 선사합의서 및 해외파트너사와의 업무확약서 혹은 합의서(원전연료 운송주선용역인 경우) 1부
 8. 한수원(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9. 시국세완납증명서(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사육,사택, 하수처리시설), 경비용역인 경우) 1부
 10. 기타 필요서류(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용역명 :
3. 제출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계약 담당직원 (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학술연구(), 시설관리(),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폐기물(),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small>※당해적심기준에 맞게 가감요</small>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기술능력	기술인력			
		기술인증			
		장비보유			
	신인도				
	소계				
입찰가격					
합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한수원업체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수력원자력(주)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학술(), 소프트웨어() 청소(), 시설관리() 경비(), 폐기물처리(), 기타분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주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비적용업체) **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한수원 업체등록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 종	서비스 / ()	전화번호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재무비율(%)	산출근거(단위 : 원)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검 토 기 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나. 결산서의 종류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1년 미만) 설립에 따른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에 의해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 외감법비적용업체의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검토)하고 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연 락 처 :

공인회계사 :

(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p>★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p> <p>★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p> <p>★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p> <p>★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p> <p>★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p> <p>★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p>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미제출시는 적격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한수원(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수원(주) 퇴직자[퇴직일(「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갑)직급			
1(을)직급			
2직급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수원(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용역결과 평가 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Input	1. 과업 수행 시 투입인력을 자격 및 인원수 대로 투입하였는가?	제안서 평가 시 제시한 투입인력 내용과 동일성 여부	동일 : 10 非동일 : 7	10	
Process	Time	2. 발주처의 일상적 작업지시 등을 협의된 기한내 완료하였는가?	협의된 기한내 미 완료 건수 당 1점 감점, 최대 3점 감점	0건: 10 / 1건: 9 / 2건: 8 / 3건: 7	10
Process	Time	3. 발주처의 서면 업무 이행 요청에 대해 요구 기한내 대응하였는가?	과업 수행 관련 발주처 서면 요청 대응 기한 미준수 건수 당 1점 감점, 최대 3점 감점	0건 : 10 / 1건 : 9 / 2건 : 8 / 3건 : 7	10
Process	Time	4. 원전연료의 수입이 계획된 기한내 이루어졌는가?	연료 수입 기한 미준수 건수 당 1점 감점, 최대 3점 감점	0건 : 10 / 1건 : 9 / 2건 : 8 / 3건 : 7	10
Process	Time	5. 원전연료 비용기의 반출이 계획된 기한내 반출되었는가?	비용기 반출 기한 미준수 건수 당 1점 감점, 최대 3점 감점	0건 : 10 / 1건 : 9 / 2건 : 8 / 3건 : 7	10
Process	Scope	6. 용역 이행과정에서 수행업체의 업무수행 과실 등으로 발주기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항의 등이 접수되었는가?	업무수행 과실 관련 서면 또는 구두 항의 접수 횟수	1회 미만 : 10 1회 이상 : 9 2회 이상 : 8 3회 이상 : 7	10
Process	Scope	7. 용역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법규 등의 위반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수행업체 또는 발주기관에게 접수되었는가?	법령 및 법규 위반사실 관련 서면 또는 구두 항의 접수 횟수	1회 미만 : 10 1회 이상 : 9 2회 이상 : 8 3회 이상 : 7	10
Process	Scope	9. 용역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서면 경고 횟수	1회 미만 : 10 1회 이상 : 9 2회 이상 : 8 3회 이상 : 7	10
Process	Scope	8. 용역 이행과정에서 수행업체의 제안을 통해 용역 이행과 관련된 비용, 기간 등의 절감 및 단축과 기타 용역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점 등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는가?	용역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점 제안 후 발주처 채택 횟수	3회 이상 : 10 2회 이상 : 9 1회 이상 : 8 1회 미만 : 7	10
Output	10. 용역수행 과정 전반에 대해 계약담당자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높았는가?	검사검수 시 용역업체에 대한 발주처의 만족도 점수	상 : 10 중 : 9 하 : 8	10	
합계				100	
*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행업체로 서면 통보된 사실에 따라 평가 수행					
* 합계 점수 97점 이상 A / 94점 이상 B / 91점 이상 C / 88점 이상 D / 85점 이하 E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괄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서식 1호 별지서식 2호
이행실적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관련협회	별지서식 3호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서식 4호
기술능력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안전성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기타	선사합의서	현대상선	원전연료 운송주선용역에 한함
	현대상선 외 선사합의서 제출의 경우 원전연료 운송가능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해당선사	
	해외 Partner와의 업무확약서	신청자, 해외Partner	
결격사유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 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 우 등 재무위험 내용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관계기관	